# 성능점검 관련 법규 주요 조항 및 내용

구 분	내 용
기계설비법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 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임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급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가. 「법인세법」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제2조 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나.「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제10조 제1항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월 31일 3.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

-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 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 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 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 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 행정지 결정이 된 자
  -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3. 영업소 소재지
  -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 평가액
  - 6. 보유기술인력
-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 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1. 2. 2.>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대적인 성능점검 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성능점검능력평가액 = 점검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가. 위의 산식 중 점검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성능점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의 총액으로 하고,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성능점검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자본금×경영평점

- 1) 위의 산식 중 자본금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만,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성능점검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자본금이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 가)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 평점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업체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 3)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점검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 성능점검업자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수)×30/100
  -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을 말한다)의 3배와 점검실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2) 위의 산식 중 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성능점 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의 총점검실적액을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보 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3) 위의 산식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유기술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가중치	1.7	1.5	1.3	1	0.7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부터 5)까지의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는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인도평가액 = 점검실적평가액×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

1)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한다.

영위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30년이상
비율	1/100	3/100	5/100	7/100

- 2) 평가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100분의 1을 뺀다.
- 3) 평가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100분의 3을 뺀다.
- 4)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성능점검업자는 100분의 5를 뺀다.
-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성능점검능력평가 시 100분의 30을 뺀다.

- 2. 제1호가목의 점검실적평가액 중 성능점검실적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상속인,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종전 법인 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합산한다.
- 3. 제1호나목의 경영평가액 중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에 따라 새로 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한 성능점검업자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로 한다.
- 4. 제1호라목의 신인도평가액 중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며, 그 밖의 지위승계자는 그렇지 않다.
- 5. 그 밖에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il			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기계설비성능	점검내역					(단위: 점	천원, 부가서	세 포함)
점검명								
현장 소재지(변	년지 <i>까</i> 지 기재)							
계약 연월일		점검 시즈	<b>낚일</b>		점검 종료	일		
총 계약금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계약방법				도급종류				
위와 같이 기계	설비 성능점검실적(	이 있음을	증명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	니다.			
		귀하	신청업	인(대표자)		년	<b>월</b> (서명 또:	<b>일</b> =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딘	2	2
			• 상호(당	명칭)				
			• 대표자 • 주				(서명 또는	= 인)
			• 전화번	호				

# [ ]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는 신청연도를 기재합니다.

10 1 112 22 2 2 1 1 2 2 3 2 2 2 2 1 3 2 2 2 2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능점검업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장 귀하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	
	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b></b>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수수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에 따른 세무대	ᄗᆀᄊᄖᄖ
	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첨부서류	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제18조제2항에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때 10 도세 2 왕 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국토교통부장관이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 제1항 제	승인한 금액
	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민단 급력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 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 표 자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수첩발급번호	입사일	티디	비고

위와 같이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기계설비 관리주체 이행 사항 등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ㅇ호,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안)]

###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 ①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용량 계산서를 포함)
- ②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
- ③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술기준 별지3호 서식)
- ④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술기준 별지4호 서식)
- ⑤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술기준 별지5호 서식)
- ⑥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기술기준 별지6호 서식)

####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 ①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기계설비 (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 2)점검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주기
- 3)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 ②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 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 1)성능점검을 위한 인력투입계획 및 장비현황
- 2)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 3)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 ③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 제8조(안전조치)

- ①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2.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 3.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 제9조(유지관리)

- ①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 ③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성능점검)

-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점검 업을 등록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⑤ 해당 연도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 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6 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 ① 관리주체는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용량 계산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제11조제1항 관련)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 조사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3. 에너지사용량 검토	1) 냉·난방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서류>

① 기계설비 준공 도서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 용량 계산서를 포함한다)

#### 부칙

제2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용량 계산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 ②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다)
- ③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 서식)
- ④ 기계설비 성능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서식)
- ⑤ 기계설비 안전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서식)
- ⑥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서식)
  - \* ①, ②번의 경우 준공과 함께 시공사가 작성 후 감리 또는 시공사가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
  - \* ③, ④번의 경우 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하여 보관)
  - \* ⑤, ⑥번의 경우 성능점검 후 작성하는 서류로 성능점검업체 또는 유지관리자가 작성
  - \* ⑥번의 경우 작성 후 보관하고 있다가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요구 시 제출

#### <성능점검 실시>

성능점검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으로 구분

- ① 유지관리
  - 외관, 운전 및 안전으로 구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그 기능을 점검 후 작성/보관
  - 점검양식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안)
    - · 별지 제1호 서식(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및 각 대상별 현황표)
    - · 별지 제2호 서식(기계설비 유지관리표)
- ② 성능점검
  - 1년에 1회 성능점검 실시(외주업체 대행 가능)
  - 점검양식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안)
    - · 별지 제3호 서식(기계설비 성능점검표 및 각 대상별 성능점검표)
    - · 별지 제4호 서식(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 해당 연도에「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거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 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6조에 따른 검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안) 제11조(성능점검)